

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12. 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1월 18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12월 2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부동산정보과장 최영창

가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,
- 근거법령의 변경 및 관련규정의 개정 사항을(위원회명칭 변경, 위원회 구성 및 위촉 사항 등)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근거 법령의 변경(안 제1조)
 -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⇒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1조)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」⇒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

가격공시 위원회」

- 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
 -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비율고려 규정 신설(안 제2조제1항)
 - 위원회의 위촉,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근거 법령을 따르는 규정 신설 및 기존 규정 삭제(안 제3조, 안 제3조의2, 안 제4조의3)
-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, 안 제6조의2)

3. 검토의견(전문위원: 송인수)

- 본 조례안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,
- 근거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, 일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
조례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하였으며,
- 조례의 안 제1조의 목적에서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로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으며,
-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,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2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 양성평등 비율을 고려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
- 안 제3조, 안 제3조의2, 안 제4조의3은 위원회의 위촉,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개정 법령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고, 기존 규정은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4조의2, 안 제6조의2는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,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음.
-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